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전자금융의 과제

이 용 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전달채널로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이용편의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통해 금융기관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자금융의 급속한 발전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금융기관들은 온라인거래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업무와는 다른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상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전자금융은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에 비해 기술 및 고객서비스 혁신과 관련한 변화속도가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은행업무시스템 도입 시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 금융기관들은 심화된 경쟁 때문에 개발구상에서부터 실제 업무의 적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과제를 전자금융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I. 머리말

정보처리와 통신의 융합, 정보처리 및 전달의 신속, 저렴화, 급속한 보급 속도 등이 오늘날 정보기술 혁신의 특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혁신과 더불어 금융거래에서도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도입되고 또 지금까지 이론은 확립되어 있었지만 계산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들어 실제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다양한 기술들이 실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하나로 여겼던 금융 기능을 분해하거나, 그것을 다른 형태로 재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너무 복잡해서 실무적인 계산이 어려웠던 미래의 현금흐름을 정보처리 기술의 향상으로 그 불확실성과 함께 정확하게 계산하여 위험과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위험과 수익의 특성이 다른 개발상품을 결합하여 위험과 수익의 특성을 변화하고 시장 거래에 알맞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발달하고 있다.

컴퓨터는 기술의 발전과 통신망 확산은 단순히 온라인 시스템이나 업무 전산화 등의 은행 내 부적인 커뮤니케이션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홈뱅킹, 펌뱅킹 등의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강화하고 있다. ATM 망,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물리적 지리적인 제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원격 접속 등을 통하여 창구나 증서 등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가상공간에서의 금융상품거래가 촉진되고 있다.

또한 고객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해 짐에 금융기관은 이전까지 구별할 수 없었던 고객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고객의 차이에 따라 고객별로 치밀하고 섬세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7년 시행을 앞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우선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본다.

II. 전자금융의 개요

1. 전자금융의 정의

현재 전자금융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인터넷 또는 전용선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등을 지칭하며, 모바일 데이터통신에 이용되는 이동통신기기, ARS에 연결된 전화기도 해당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금융업무’는 금융회사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또는 소비자)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 거래를 지칭하되, 일반적으로 개시에서 종료까지 비전자적 수단의 개입이 없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만을 포함한다.

예컨대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고객이 보험회사에 전화하

여 직원에서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경우(TM, Tele Marketing)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직원(비 전자적 수단)이 개입되므로 전자금융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거래주문을 하는 경우나 인터넷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직원과 직접 대출상담을 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금융 또는 전자금융은 일반 금융업무와 구별되는 새로운 별개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업무를 제공할 때 그 전달경로(delivery channel)로써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전자금융의 연혁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금융은 거래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증권거래(brokerage)에서 제일 먼저 본격화되었으며, 자금이체 업무를 중심으로 은행부문이 그 뒤를 이으면서, 점차로 복잡한 거래성격을 갖는 증권부문의 발행시장과 보험거래에까지 확산 발전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전자지급결제 방법이 출현하면서 전통적 금융기관 이외의 업체에 의한 전자금융관련 서비스의 진입도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1) 온라인증권거래

온라인증권거래는 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전자통신에 의한 주식거래가 허용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회사는 문서에 의한 수탁방법 외에, 전화, 전보,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해 매매거래를 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997년 5월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주식매매거래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999년과 2000년에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2) 인터넷뱅킹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뱅킹 도입에 앞서 국민은행이 1987년 12월 펌뱅킹 자금이체업무에 대한 PC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고, 1991년 11월에는 홈뱅킹 업무에 대한 PC뱅킹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PC뱅킹 서비스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여 1999년에 들어서는 이미 약 9만개의 기업과 약 7백만명의 개인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뱅킹은 1996년 9월 PC뱅킹 해킹사건으로 제기된 보안문제의 해결이 늦었던 데

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은행구조조정으로 은행들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사유 등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9년에 신한은행 등 9개 은행과 한국통신이 인터넷뱅킹 서비스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3) 인터넷보험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험판매는 감독당국이 1998년 3월 인터넷을 포함한 신판매채널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자보험 판매의 불법적 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제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보험모집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보험부문은 아직까지 상품의 복잡성, 주로 대인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판매실적이 저조하였으나 비교적 상품의 단순화 및 표준화가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청약이 가능한 사이버몰이 확대되고 인터넷전용 생명보험 상품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4) 전자지급결제

전자지급결제 분야는 크게 B2C분야와 B2B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B2C 전자상거래에서의 지급결제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신용카드결제, 은행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휴대폰요금 합산지불방식(Phone bill), 그리고 메일뱅킹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이체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오프라인거래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신용카드가 온라인에서 폭넓게 사용된 데에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신용카드회사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전자지불대행업체(Payment Gateway)가 등장하면서 촉매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전자지불대행업체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7년이며, 이후 B2C 전자상거래 성장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은행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주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의 경우에는 크게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의 이용이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다.

카드형의 경우에는 2000년 6월 및 7월 몬텍스 및 K-Cash가 각각 시범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주로 은행 및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형의 경우에는 이보다 앞서 1999년 6월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IC카드형에 비하여 인프라구축이 필요치 않아 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인터넷업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휴대폰요금 합산지불방식은 정보통신부가 2000년 10월 이통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겸업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층의 소액결제에 활용되는 추세이다.

메일뱅킹 및 휴대전화자금이체의 경우 2000년 10월 인터넷 업체인 메일캐스터가 최초로 메일뱅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4월 국민은행(舊 주택은행)은 기존의 메일뱅킹서비스와 병행하여 휴대전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B2B 전자지급결제는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고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유통금융제도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2000년 5월 어음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납품업체가 납품완료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업체 거래은행(지급은행)에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지급은행이 구매업체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결제하고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대신하여 받은 전자의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1년 2월 개별 은행별로 개발·도입되었으며 현재 B2B 전자지급결제의 근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중소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음의 폐해를 줄이고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 최근의 전자금융 취급실적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2006년 2/4분기 중 전자금융 취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표 1>과 같이 금융권역별 전자금융 취급금액은 대부분 감소를 하였다. 조사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18개, 증권 32개, 보험 24개, 전업카드사 6개 등 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를 금융권역별로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금융권역별 전자금융 취급실적

(단위: 천명, 천건, 십억원, %, %p)

구분	'06. 1/4분기(A)	'06. 2/4분기(B)	변화			
			증감(B-A)	증감률		
은행	이체건수	918,302 (76.3) [100.0]	945,516 (77.2) [100.0]	27,214 (0.9) [-]	3.0	
	인터넷	264,620 (22.0) [28.8]	271,697 (22.2) [28.7]	7,077 (0.2) [Δ0.1]	2.7	
	모바일	8,909 (0.7) [1.0]	9,989 (0.8) [1.1]	1,080 (0.1) [0.1]	12.1	
	CD/ATM	482,437 (40.1) [52.5]	501,280 (40.9) [53.0]	18,843 (0.8) [0.5]	3.9	
	폰뱅킹	162,336 (13.5) [17.7]	162,550 (13.3) [17.2]	214 (Δ0.2) [Δ0.5]	0.1	
	이체금액	1,819,767 (20.3) [100.0]	1,798,380 (19.1) [100.0]	Δ21,387 (Δ1.2) [-]	Δ1.2	
	인터넷	1,475,400 (16.4) [81.1]	1,452,763 (15.4) [80.8]	Δ22,637 (Δ1.0) [Δ0.3]	Δ1.5	
	모바일	6,730 (0.1) [0.4]	7,466 (0.1) [0.4]	736 (-) [-]	10.9	
	CD/ATM	176,633 (2.0) [9.7]	180,923 (1.9) [10.1]	4,290 (Δ0.1) [0.4]	2.4	
	폰뱅킹	161,004 (1.8) [8.8]	157,228 (1.7) [8.7]	Δ3,776 (Δ0.1) [Δ0.1]	Δ2.3	
	가입자수**	58,259	60,980	2,721	4.7	
	전자금융대출	9,848 (1.9)	10,752 (1.8)	904 (Δ0.1)	9.2	
	증권	거래금액	1,532,118 (65.1)	1,245,989 (60.5)	Δ286,129 (Δ4.6)	Δ18.7
	카드	이용건수	49,453 (6.7)	51,656 (6.8)	2,203 (0.1)	4.5
이용금액		16,851 (20.4)	16,856 (20.5)	5 (0.1)	-	
보험	체결건수	32 (0.2)	22 (0.1)	Δ10 (Δ0.1)	Δ32.4	
	체결금액	10 (0.1)	9 (0.0)	Δ1 (Δ0.1)	Δ15.2	

* 은행: 전자금융거래 중 센터컷(일괄이체)은 제외, 가입자 수는 은행간, 경로 간 중복가입을 모두 집계

증권: 온라인 수탁거래기준(매수·매도액의 합산)

카드: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전자금융을 통한 이용금액

보험: 인터넷을 통한 청약 및 초회보험료(1회)를 전자금융으로 납입한 보험

** 금분기부터 가입자수에서 CD/ATM 가입자수는 제외하고 산정

※ ()은 당해 업무 전체실적대비 전자금융거래 비중, []은 당해 전자금융거래 실적대비 비중

은행은 2006년 2/4분기 중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이체거래 건수는 전분기 대비 3.0%가 증가한 946백만건으로 총 자금이체 건수(1,225백만건)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 금액은 전분기 대비 1.2%가 감소한 1,798조원으로 전체 자금이체금액(9,41.조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금융의 경로별 비중은 인터넷뱅킹 80.8%로 금액은 1,453조원이고 CD/ATM이 10.1%로 금액은 181조원이고 폰뱅킹이 8.7%로 금액은 15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의 가입자 수는 전 분기 대비 4.7%증가를 한 60,980명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인터넷 뱅킹은 29,391천명, 폰뱅킹은 29,109천명, 모바일뱅킹은 2,480천명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증권거래 대금은 전분기 대비 18.7%가 감소한 1,246조원으로 전체 증권거래대금의 60.5%를 차지했다. 전분기 대비 온라인 주식은 182조원, 선물은 1,104조원이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를 나타냈다.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건수는 전분기 대비 4.5%가 증가한 52백만건으로 전체 거래건수의 6.8%를 차지하였으며 온라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분기 대비 50억원이 증가한 17조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거래대금의 20.5%를 차지했다.

인터넷 보험계약은 86억에 22천건으로 전분기 대비 15억원 1만건이 감소를 하였다. 전체 보험 계약에서 인터넷보험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으로 0.1%를 차지했다.

또한 전통적 거래인 어음·수표 결제 규모는 하루 평균 13조 1,150억원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감소하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어음·수표 결제는 2000년 초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25조원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21조원대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14조원대에 그친 반면 전자금융공동망 결제는 해당 통계가 처음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2분기 하루 평균 1조 6,020억원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13조원대로 불어나 2001년 2조원대를 넘어선 뒤 2002년 6조원대로 급등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인터넷 쇼핑 등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거래가 급증한 반면 어음·수표 등 전통적인 거래는 퇴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뱅킹은 이미 금융서비스 활용도 면에서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건수를 넘어서면서 금융기관들이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 창구를 통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줄인 결과이며 거래건수

면에서 전자금융공동망 결제는 아직 어음·수표 결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3/4분기 전자금융공동망 결제 건수는 하루 평균 263만 6,000건으로 어음·수표 결제 307만 3,000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거래건수 면에서도 온라인 거래가 곧 어음·수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Ⅲ.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는 기존의 민법이나 상법과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로 규율되고 있어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금융거래의 확산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논의가 활발해졌다. 무엇보다 입법환경이 크게 변화한 점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촉진시켰다. 2001년 6월 기준으로 은행업무 처리유형 중 창구거래의 비중이 43.3%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말에는 30.1%로 줄어 들었다. 반면 인터넷 बैं킹을 통한 업무처리비중은 동기간 중 5.9%에서 31.6%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자화폐, 선불과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등 과거에는 없었던 전자지급거래가 등장하고 새로운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비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전자금융사고와 지급결제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은행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현상까지 부분적으로 발생한다.

기존 법률로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존 금융법률은 오프라인상의 금융거래 위주로 규정되었다. 또한 서면, 대면거래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약관의 불공성 및 계약당사자 쌍방만 규율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는 우선 비서면성, 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인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해킹시 손해발생 책임 등을 명확히 규율하기 곤란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제가 미비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정보통신관련 법률은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적문제를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법 제정이 폐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자금융이체가 많아지면서 1993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 2001년부터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됐다. 이후 유보와 폐기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논의와 이익상충 문제에 제기를 거치면서 제입법화가 추진되어 2006년 4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8일 공포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법과 사업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일반법 형태로 제정될 것이며 여기서 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절차와 요소 이용자 보호 및 책임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사업법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업무범위와 진입규제 및 검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법에서는 해킹 등과 같은 이용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나 정보통신외주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먼저 책임을 부담한 뒤에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휴대폰 결제를 담당하는 통신업체 등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성, 보관토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기록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기로 하는 등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사업법에서는 휴대전화 결제업체 등 비금융사업자가 금감위 허가과 등록을 마친 후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건전성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50억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소규모 업체들은 등록제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금감위허가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자화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업체는 6개월 내 등록을 마치도록 해 2007년 1월 1일 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

법 조항	주요 내용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조업자 과실시 금융기관이 일단 책임 부담	IT 외주업체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금융기관이 우선 책임을 부담하고 사후적으로 구상
전자금융거래 기본틀 법제화	전자지급 수단별로 효력발생과 철회가능 시기 명확히 규정
이용자 보호장치 강화	전자금융거래 약관 명확히 공개 명시토록 함
비금융사업자도 건전성 감독	통신업체 등 비금융사업자가 전자금융업을 하려면 금감위 허가 등록을 받아야 하고 건전성도 감사

IV. 전자금융에 대한 정책당국의 과제

1. 전자금융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대응 원칙

1) 기술중립성 원칙

특정 기술에 대하여 경쟁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정책 또는 규제를 일컫는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은 〈표 3〉에서와 같이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원칙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종전에 공개키기반(PKI)의 전자서명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전자서명법”이 생체인식 같은 새로운 인증기법의 출현 및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2001년 12월에 특정 기술의 명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 이러한 취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기술중립성은 보다 광의로 해석되어 전자상거래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 또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법규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금융에 있어서의 기술중립성은 일반적으로 전달경로(delivery channel)에 있어서의 정책의 중립성을 의미한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은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기술중립성 정책을 채택한 배경으로 다음 3가지의 감독방침을 들고 있다.

- 첫째, 감독규제의 근본 원칙은 전달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둘째,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감독당국은 시장참여자와 시장의 정당한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불필요한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 셋째, 감독당국은 인터넷 환경하에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투명성과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함

〈표 3〉 기술중립적 정책 및 기술우호적 정책 비교

구 분	개 념
기술중립적 정책	전달경로별로 상이한 리스크와 통제환경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규제를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기술에 대하여 경쟁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정책을 의미
기술우호적 정책	특정한 기술의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별적인 경쟁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모든 전달경로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특정 전달경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2) 기술혁신과 금융안전성

기술혁신 및 경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정책대응상의 문제는 금융의 안전성 유지 필요성과 경쟁·혁신의 촉진 필요성이라는 다소 상충(trade-off)되는 정책목표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자금융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환경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지나친 감독당국의 개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전자금융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인터넷관련 버블붕괴에 따른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금융업에 대하여도 보수적인 인가 및 감독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이며, 인터넷금융기관의 출현과 함께 본격화된 과도한 가격경쟁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2. 전자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제도의 보완

1) 전자금융거래관련 법률관계의 명확화

전자금융은 기본적으로는 단지 전달채널만을 달리하였을 뿐 기존의 서비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활동과 동일한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관련 법률들은 전

자금용의 특성을 충분히 상정하지 않고 마련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제도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 안전성을 법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4>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법 명	제정일자	제정 취지
전자거래기본법	1999. 2. 8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거래계약 및 분쟁 처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전자서명법	1999. 2. 8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인증서의 효력 등에 대해 규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2. 3. 30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오프라인의 금융거래가 일반상거래와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만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전부 포괄하지는 못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명확한 법규 정립이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사안 중에는 “금융회사의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감독관련 권리·의무관계의 명확화”, “거래의 철회와 관련한 원칙”, 그리고 “무권한거래에 대한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 등이 있다.

특히, 무권한거래의 책임문제는 해킹 등을 통하여 고객이 아닌 제3자가 고객 명의로 거래를 행하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에 대하여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중요하다. 이와 관련, 2001년 12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여 분쟁소지가 있는 사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제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무권한거래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우선 금융권이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금융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이로써 전

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은 증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따른 피해발생시 책임소재 및 보상기준을 포괄하는 기본약관 제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특수성을 보다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현행 법리와 상충되거나 현행 법률로서 규율하는 것이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2002년 10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 동 법률안에 따르면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채택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2) 전자금융거래관련 인증제도의 확립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창구직원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고객 또는 제3자가 금융회사 시스템에 임의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지만 비대면(非對面)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어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및 고객입장에서 적절한 이용자 확인(인증)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이용자번호(Identification number) 및 비밀번호(password), 전자인증서(electronic certificate), 고객정보가 내장된 휴대장치(token), 이용자의 고유한 신체정보(bio-metrics)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인증서는 위조 및 변조가 어렵고 부인방지기능(Non-repudiation)을 갖추어 모든 은행들이 주요 전자인증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동 전자인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공인인증서제도를 도입하여 동 인증수단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고 그 효력을 보장함에 따라, 개별 회사에서 발급하는 사설인증서에 비해 공신력이 높고,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다수 금융회사의 전자

금융거래는 물론 전자민원, 조달, 입찰 등의 정부 관련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도 그동안 금융회사가 가급적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은행·비은행, 증권, 보험분야에서 모두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즉, 은행·비은행의 경우 2002년 9월 1일부터 사설인증서의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사설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시 공인인증서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 5월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증권사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사이버트레이딩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보험사의 경우에도 2003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이용자를 확인하도록 권고하였다.

앞으로 공인인증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의 인증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무리없이 금융권에 수용되도록 하고, 향후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인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3. 금융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과제

1)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무 영위에 대한 대응

비금융기업의 전자금융 관련업무 진입에 대하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건전성 규제를 받으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의 경쟁상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부실화 등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파급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기관이외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금융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전자화폐와 같이 발행업자의 파산시 불특정다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준하여 별도의 인가(또는 등록)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업무를 허용하고 높은 수준의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입장은 유럽연합 및 미국의 경우에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통신업자 등 비금융기업이 지급결제업무와 같은 전자금융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독방식을 적용할지는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하다. 재경부가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따르면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한 경우에는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환금성·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의 경우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는 일반사업과 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된 업무별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전자화폐발행자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만 영위하도록 하고, 전자화폐 발행대금의 건전한 운용이 확보될 수 있어 환금보장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비금융업무와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금융회사의 경쟁우위와 개인정보 보호

전자금융 환경하에서 금융회사가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외주와 전략적 제휴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우선 금융회사의 업무를 외주받은 비금융업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규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인터넷광고, 쇼핑몰 연계운영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비금융회사의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지던 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부실 등 악영향이 금융 본연의 업무에 파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의 비금융기업 소유를 엄격히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과 관련해서는 투자가능기업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정보의 활용이 금융회사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잡는다면, 정책당국도 이러한 금융회사의 경쟁우위를 통한 경영전략을 북돋아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정보의 부당한 유출·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전자금융의 안정성 제고방안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IT기술의 발전,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보급 환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발생 개연성도 증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적 범죄가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전자금융거래의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표 5>와 같다. 2002년에 비해 2005년에 100%도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인터넷 뱅킹	1(71)	-	1(3)	5(149)
텔레뱅킹	-	1(10)	5(162)	6(262)
현금/신용카드복제	4(452)	6(66)	6(26)	-
합 계	5(523)	7(76)	12(191)	11(411)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이 증가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비밀번호 위·변조 등 각종 사고발생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기관을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금융보안전담기구를 통한 해킹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해킹대응 자문 등 전자금융과 관련한 보안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금융보안연구원」이 금년 12월 출범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하여 지난 9월 29일 금감위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10월 4일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현재 출범을 준비중이다. 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① 각종 해킹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금융회사에 대응방안 자문 ② 금융회사들이 채택할 정보보호제품의 적합성 테스트 및 자문 ③ 금융회사 OTP 통합인증센터 운영 및 관리 등이다. 앞으로 연구원이 설립취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여, 금융회사의 전자적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급 활성화 하는 것이다. OTP(One Time Password)는 전자금융거래시 고정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존의 보안카드와 달리, 거래시마다 휴대용 기기 등을 통해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시스템이다. 현재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시 사용하고 있는 보안카드는 한정된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함에 따라, 해킹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 내포하고 있었다.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안카드를 OTP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나, 고객들이 거래 금융회사별로 OTP를 구입·소지하여야 함에 따른 불편과 구입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은행은 전세계 금융이용자에게 약 2억개의 OTP를 보급할 예정이며, 국내 은행의 경우 9개 은행에서 인터넷 및 텔레뱅킹용으로 약 30만개를 발급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금융보안연구원이 출범하면 산하에 OTP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하여 운용할 예정이므로, 고객들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OTP만 소지하면 다수의 금융회사와 거래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중 OTP 통합인증센터가 구축되는 대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OTP 보급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는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시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수단의 보안성 정도를 감안하여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보안등급별로 “1회” 및 “1일” 거래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다.

보안등급 및 거래한도 예시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보안등급 및 보안등급별 거래한도(예시)

<보안등급>

거래이용수단	보안 등급
OTP발생기	1등급
HSM 방식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보안카드+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	2등급
보안카드	3등급

※ HSM(Hardware Security Module): 공인인증서 복사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 USB 저장장치

〈보안등급별 거래한도〉

(단위: 천만원)

구 분			기존 한도	보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터넷 뱅킹	개인	1회	10	10	5	1
		1일	50	50	25	5
	법인*	1회	50	50		
		1일	500	500		
텔레뱅킹	개인	1회	5	5	2	1
		1일	25	25	10	5
	법인	1회	10	10	2	1
		1일	50	50	10	5

주: * 법인은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1등급 보안수준 의무화

넷째는 전자금융 관련 감독법규의 정비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금년 12월까지 제정하고, 금융회사들이 동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것이다. 전자금융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규정할 사항을 예로 보면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도기준,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다.

VI. 결 론

전자네트워크의 활용으로 금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보다 복잡해지고 참여기관의 이질성이 증가함으로써 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적격성, 그리고 투자자 및 소비자보호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비은행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참여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이들기관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참여기관으로서 지녀야 할 적정수준의 적격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금융거래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해설, 2001. 10
_____, 전자금융감독정보, 2002. 12
_____, 2006년 2/4분기 전자금융 취급실적, 2006. 9
-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추진, 2006. 10
- 김기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과제, 2006. 6
- 김병언, 전자금융시대의 은행경영계획, 2000. 11
- 김인석, IT 및 전자금융 감독·검사 방안, 2004. 6
- 김인섭,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2006. 11
- 김자봉,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06. 4
_____, 「최근 전자금융의 발전과 주요 이슈」, 2006. 6
- 박성희,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우체국 전자금융 발전 전략」, 2001
- 송철호, 「전자금융의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000. 12
- 최종욱,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 보안 대책, 2006. 6